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18
------------	-----

2014년 12 월 17 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10월 14일, 박운기·서영진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 2014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교통위원회(2014년 12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운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승객과 자가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를 연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택시유사 영업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 등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동시에 합법적인 운송서비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정의를 신고하고 이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200,000원으로 함(안 별 표 4)

##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생략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4.10.20 ~ 2014.10.27

- 제출의견

(1) 이정훈(10.24) :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바, 입법 유예 필요

(2)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10.27)

- 작은 액수의 포상금(200,000원)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바, 포상금을 1,000,000원으로 인상 필요

(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10.27)

- 작은 액수의 포상금(200,000원)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단기간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금을 최소 1,000,000원 이상으로 인상 필요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원안동의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및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 내에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정의와 동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관련 법령 검토

-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과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일명 “렌트카”)를 연결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영업활동(일명 “우버 서비스”)가 등장하여 영업을 이루어지고 있음

#### ※ 참고 : 우버 서비스 제공 형태

서비스명(출시일자)	서비스 내용
우버블랙('13.8)	기존 리무진 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에쿠스, 벤츠, BMW 등 고급세단을 이용자와 연결
우버엑스('14.8)	우버블랙과 유사하나 등급이 낮은 렌터카를 활용하는 저가의 운송서비스
우버택시('14.10)	영업용 택시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1조 등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와 렌트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버 서비스를 통해 자가용 자동차와 렌트카를 유상운송행위 등에 이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을 위배한 것임

※ 참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p><b>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b>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p> <p>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b>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li> <li>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li> </ol> <p>② 생략</p>
---

- 또한 현행 조례는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정의와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 신고포상금(200,000원)의 적정성**

- 동 개정조례안은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200,000”만원을 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 택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을 최소 200,000, 최대 1,0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은 최소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금액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사항을 살펴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포상

금액이 최소 1,000,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처분이 가능한 “자가용 및 렌트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을 200,000원으로 정한 것은 다소 적은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으나 신고포상금을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신고를 목적으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들이 양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원안동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택시관련 조합 및 관련 노조 등에서는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 및 단기간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금액을 1,000,000원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참고 : <택시 관련 위반행위별 포상금액 및 처분 내용>

위반 행위	포상금액	근거 법령	처분	
			면허취소 <sup>1)</sup>	벌칙 <sup>2)</sup> 및 과태료 <sup>3)</sup>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법 제4조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법 제12조	가능	과징금 <sup>4)</sup> 120만원 또는 60일 정지 및 사업면허취소 <sup>5)</sup>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법 제12조	가능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법 제14조	가능	과징금 <sup>6)</sup> 120만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200,000원	법 제23조제1항제9호	불가능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법 제23조제1항제9호	불가능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법 제26조제1항제2호	불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유상운송 행위 (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200,000원	법 제34조 제1항	불가능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불가능	
		법 제81조 제3항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서는 사안에 따라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2) 법 제90조(벌칙)  
 3) 제94조(과태료 등)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와 렌트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해서 2십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액을 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답변 : 현행 조례에 신고포상금을 서울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관련 법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와 렌트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서울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 3호 바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가의 위반내용 6호 바목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 17호

**나. 수정 주요골자**

-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별표)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118
----------	--------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 관련 법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와 렌트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서울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2. 주요 골자

- 가.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별표)

###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 개정조례안 별표 10.란 중 “200,000원”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의원발의안)	수정안(교통전문위원실)																																																																								
<p>제2조 1. ~ 10.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11. (생략)</p> <p>제3조 ① (생략)</p> <p>1. ~ 9.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10. (생략)</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b></p> <hr/>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관련)</p>	<p>제2조 1. ~ 10. (현행과 같음)</p> <p>11. <b>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는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p> <p>12. (현행과 같음)</p> <p>제3조 ① (현행과 같음)</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b>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p> <p>11. (현행과 같음)</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b></p> <hr/>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관련)</p>	<p>제2조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 (개정안과 같음)</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b></p> <hr/>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위반 행위</th> <th style="width: 50%;">포상금액</th> </tr> </thead> <tbody> <tr><td>1. 무면허 개인택시</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원</td></tr> <tr><td>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원</td></tr> <tr><td>3.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원</td></tr> <tr><td>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원</td></tr> <tr><td>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tr> <tr><td>6. 개인택시 부제 위반</td><td style="text-align: right;">200,000원</td></tr> <tr><td>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tr> <tr><td>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tr> <tr><td>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500,000원</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td><td></td></tr> <tr><td>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td><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tr> </tbody> </table>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신 설>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위반 행위</th> <th style="width: 50%;">포상금액</th> </tr> </thead> <tbody> <tr><td>1. 무면허 개인택시</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원</td></tr> <tr><td>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원</td></tr> <tr><td>3.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원</td></tr> <tr><td>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원</td></tr> <tr><td>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tr> <tr><td>6. 개인택시 부제 위반</td><td style="text-align: right;">200,000원</td></tr> <tr><td>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tr> <tr><td>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tr> <tr><td>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500,000원</td></tr> <tr><td>10. <b>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td><td style="text-align: right;"><b>200,000원</b></td></tr> <tr><td>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td><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tr> </tbody> </table>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10. <b>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	<b>200,000원</b>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위반 행위</th> <th style="width: 50%;">포상금액</th> </tr> </thead> <tbody> <tr><td>1. 무면허 개인택시</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원</td></tr> <tr><td>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원</td></tr> <tr><td>3.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원</td></tr> <tr><td>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원</td></tr> <tr><td>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tr> <tr><td>6. 개인택시 부제 위반</td><td style="text-align: right;">200,000원</td></tr> <tr><td>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tr> <tr><td>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tr> <tr><td>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td><td style="text-align: right;">500,000원</td></tr> <tr><td>10. <b>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td><td style="text-align: right;"><b>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b></td></tr> <tr><td>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td><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tr> </tbody> </table>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10. <b>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	<b>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b>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신 설>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10. <b>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	<b>200,000원</b>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10. <b>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	<b>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b>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는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제3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별표 중 10.란을 11.란으로 하고,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조 1. ~ 10.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11. (생략)</p> <p>제3조 ① (생략)</p> <p>1. ~ 9.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10. (생략)</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b></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반 행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포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 무면허 개인택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원</td> </tr> <tr> <td>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0원</td> </tr> <tr> <td>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원</td> </tr> <tr> <td>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원</td> </tr> <tr> <td>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 </tr> <tr> <td>6. 개인택시 부제 위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원</td> </tr> <tr> <td>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 </tr> <tr> <td>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 </tr> <tr> <td>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td> <td></td> </tr> <tr> <td>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 </tr> </tbody> </table>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신 설>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p>제2조 1. ~ 10. (현행과 같음)</p> <p><b>11.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는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p> <p><b>12. (현행과 같음)</b></p> <p>제3조 ① (현행과 같음)</p> <p>1. ~ 9. (현행과 같음)</p> <p><b>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p> <p><b>11. (현행과 같음)</b></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b></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반 행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포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 무면허 개인택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원</td> </tr> <tr> <td>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0원</td> </tr> <tr> <td>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원</td> </tr> <tr> <td>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원</td> </tr> <tr> <td>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 </tr> <tr> <td>6. 개인택시 부제 위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원</td> </tr> <tr> <td>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 </tr> <tr> <td>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td> </tr> <tr> <td>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원</td> </tr> <tr> <td><b>1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b></td> </tr> <tr> <td><b>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b></td> <td style="text-align: center;"><b>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b></td> </tr> </tbody> </table>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b>1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	<b>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b>	<b>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b>	<b>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b>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신 설>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b>1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b>	<b>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b>																																																
<b>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b>	<b>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b>																																																